

## 평생교육법 영문 번역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조순옥(인제대학교, 조교수)\*

### 요약

이 연구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며, 통일성을 확보한 영문 번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을 대상으로 번역어의 적절성, 번역의 통일성, 번역의 불완전성 여부를 기준으로 번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번역어의 올바른 선택 측면에서 ‘학습’,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센터’, ‘학습휴가’, ‘학습계좌’, ‘평생교육사’의 번역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일적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평가인정’, ‘평생교육 과정’, ‘평생교육 상담’을 조항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번역어의 통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법」 원문에 포함되지 않는 표현의 표현 등의 불완전한 번역 문제 역시 나타나 이의 수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의 적절성을 검토한 초기 연구인 이 연구에서 복수의 개선안이 제안된 조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번역어 선택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을 포함한 평생교육법 전 조항을 대상으로 언어적 측면에서의 번역 오류까지 검토한다면 더 완전한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이 제안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평생교육법, 평생학습, 법령 번역, 번역 품질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의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체계와 교육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모든 체계적 교육활동은 법의 직접적 규제에 놓여있으며, 법에 의한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오혁진, 2011: 121 재인용). 따라서 법에서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념과 개념을 나타

\* 주저자: 조순옥(50834,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sunokjo@inje.ac.kr)

내는 명칭의 선택은 우리 사회에 큰 공적 영향력을 미친다. 평생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오혁진, 2011: 121). 법령에 담긴 개념과 명칭의 공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를 외국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의 문제는 번역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법령 번역은 한글 원본과 동등한 정본성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다른 번역의 지침이 될 뿐 아니라 법적 테두리를 넘어 학술 및 실무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자 또는 실무자가 타 국가와 관련된 학술 저서나 실무 문서를 작성할 때 공신력 있는 용어를 선택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법령 번역상의 법 개념을 원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일호, 2022: 9, 10). 따라서 우리나라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해외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자나 실무자들이 최우선으로 참고할 「평생교육법」의 외국어 번역에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관련 개념과 명칭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평생교육 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의미 있는 주제이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영문 번역본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번역센터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현재 평생교육법은 2019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공포번호 제16677호)이, 평생교육법 시행령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안(공포번호 제30132호)이 번역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법의 영문 법령이 공공 번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 번역으로서 평생교육법의 영문 법령은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나라의 콘텐츠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관심과 호감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 번역은 이 번역을 사용할 해외 사용자의 배경지식 차이를 고려하여 의도한 정보가 제대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의 정보 전달이 필요하며, 민간 번역물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번역 품질을 확보할 것을 요구받는다(정호정, 2013: 217-218). 법령 번역은 독자들이 우리 법령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 입장에서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고려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지은, 최효은, 박혜진, 2021: 182).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수행하는 것(이지은, 최효은, 박혜진, 2021: 183) 뿐 아니라 법적으로 상호 의사소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김진아, 2021: 2). 그렇기 때문에 법령 번역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때 번역결과물이 이용자 입장에서 이해 가능한지 여부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유정주, 2017: 103).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졌던 법률 번역에 관한 연구(박준석, 2016; 이일호, 2022; 유정주, 2012; 이지은, 최효은, 2020a; 이지은, 최효은, 2020b)에서는 법률 번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상·하위 법률체계 내에서의 법령 번역의 불일치, 동일 법령 내에서의 용어 사용의 정확성과 일관성 문제(권세훈, 윤계만 2012; 박준석, 2016), 부자연스러

운 목표 언어 표현, 오역(이지은, 최효은, 2020a)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독자들이 법령의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이 지적되었다(권세훈, 윤재만 2012). 법률 번역이 법령 번역센터라는 공적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번역상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 용어와 일반 어휘의 차이, 어휘 등가성 부족 다의어,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번역 과정에서 대응어를 찾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법률 번역은 법률 체계와 법률 용어의 차이, 법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번역문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이지은, 최효은, 2022: 248). 둘째, 법령 언어는 난해하고 고어적 표현이 많으며, 전문용어를 높은 빈도로 사용한다.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문용어(technical terms)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 내에서 특정 학문 분야 또는 특정 주제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을 의미한다(정호정, 2010: 236). 제대로 된 법률 번역을 위해서는 언어능력뿐 아니라 해당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커뮤니케이션 목적, 텍스트의 유형 및 기능에 관한 능력이 필요하다(이지은, 최효은, 2020a: 251 제인용).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법률 문서의 번역 전략(이상모, 2021; Sarcevic, 1997; Atlay, 2002; Varo & Hughes, 2002; 김도훈, 손수연, 2011: 16에서 제인용), 법률 번역에서 전문용어 번역에 관한 연구(서정목, 2013; 유정주, 2019)와 같이 전반적인 법률 번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개별 법령에 대해서는 민법(서정목, 2013),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지은, 최효은, 2020a), 저작권법(이일호, 2022), 생명·의료 분야 법령(박준석, 2016), 국적법 등 7개 법령(이지은, 최효은, 2022),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등 13개 시행령(이지은, 최효은, 2021)의 번역 문제를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번역본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의 개념 사용과 관련된 연구(오혁진, 2011)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의 쟁점, 법의 구조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호근, 2000; 이종만, 2002; 이종만, 2003; 고영상, 2010). 그동안 이루어졌던 법률 번역 관련 연구에서 교육 관련 법령에 등장하는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방송통신대학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기는 했다(이상모, 2021: 92-96). 그러나 「평생교육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제도나 전문용어의 번역 문제를 다룬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번역한 법령의 수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이와 관련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와 같이 개별 법령의 번역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법령 번역 수준의 전면적 검토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며, 연구를 통하여 제기된 결과를 새로운 법령 번역이나 기존 번역의 수정에 활

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박준석, 2016: 496-497).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법령과 정책을 다루는 연구는 우리나라 학자뿐 아니라 국내 학자와 해외 학자 간의 협력 연구 또는 해외 학자들만의 연구(예를 들어 Chauhan, Bak, Subbaswamy & Dixit, 2017; Huang, 2017; Teo, Kim & Liang, 2018; Lee & Desjardins, 2019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연구 내에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학습도시, 문해교육,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법」과 이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를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용어가 서로 일치되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평생교육사'만 보더라도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본에서는 'certificated lifelong education teacher'로 번역하고 있다. 평생교육사가 법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번역을 따르는 연구는 거의 없으며, 연구마다 서로 learning education professional(Kim, Kim & Rhee, 2021) lifelong learning educator(Huang, 2017), lifelong educator(Lee & Kang, 2022), adult educator(Han, 2001)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같은 제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는 독자로 하여금 이를 서로 다른 연구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평생교육 학계 차원에서 「평생교육법」 상의 개념과 용어에 관하여 명확한 번역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학문적 교류 차원에서 의미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본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본의 수요자가 평생교육 분야의 외국인 학자 또는 실무자라는 전제하에 법령의 영문본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관련 주요 개념과 제도를 정확하게 번역하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법령 번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법령 번역의 주 책임기관인 법제처가 법제연구원과 함께 발간한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서는 법령 번역의 기본 목표를 '원문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며, 전체적으로 번역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원칙으로 정확성, 이해의 용이성, 통일성을 제시하고 있다(법제처, 법제연구원, 2017: 3). 이 연구에서는 이를 기본 원칙으로 「평생교육법」의 개념과 용어의 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영문 번역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관련 개념과 제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생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학자와 실무자들이 「평생교육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정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우리나라의 법령 영문 번역 현황

현재 우리나라 법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법령 번역 사업을 통하여 영어와 중국어 번역이 제공되고 있다. 즉, 공공 번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공공 번역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국가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번역으로, 그 결과물을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 공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번역’을 의미한다(정호정, 2013: 216 재인용). 공공 번역으로서 법률 번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는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공공성’이다. 둘째, 번역에 대한 구체적 수요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 및 기구가 개입하여 ‘잠재적 수요’에 따라 번역을 발주하여 이루어진다. 셋째, 단순한 정보 전달 기능 이외에 독자에게 일정한 효과를 달성하는 ‘효과 유발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받는다. 예를 들어 문화와 관련된 번역물을 통하여 우리 문화에 관한 관심이나 호감을 유발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번역 결과물의 영향이 민간 분야 번역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며, 과장이 크다(정호정, 2013: 217-218). 실제 우리나라 법령 번역을 담당하는 법령번역센터에서는 법령 번역 사업의 목적을 ‘대한민국의 현행법령을 영문 및 기타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대외무역 및 교류의 촉진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생활편의에의 기여를 통하여 대한민국 법령의 세계적인 이해증진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령번역센터, n.d).

법령 번역 사업은 영문법령집 발간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1982년 법제처에서 처음 대한민국 영문법령집 발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2년 법제처의 영문법령 사업이 한국법제연구원으로 이관, 대한민국 영문법령집은 계속해서 발간되고 있다. 공식적인 사업은 2008년 법령 영문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권세훈, 윤재만 2012: 6-7). 2010년에는 대한민국 영문 법령 전달센터가 설립되어 우리나라 법령 번역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영문과 중문 법령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법령번역센터에서는 소속 번역사들이 번역을 담당하며, 이들의 번역문에 대하여 내부 감수 업무 담당자와 원어인 수준에 준하는 법률적 소양을 갖춘 외부 감수자의 내용 검토를 거쳐 최종 번역물을 결정, 제공하는 절차를 거친다(이지은, 최효은, 박해진, 2021: 179).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2년 8월 기준으로 2,289개의 법령이 외국어로 번역, 제공되고 있으며, 연혁법령을 포함하면 14,541개 법령이 외국어로 번역되었다(법령번역센터, 2022).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사항은 2015년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된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 훈령에서는 국가 차원의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번역 법령정보의 개방과 공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를 위하여 법제처장이 국내외 법령의 외국어 번역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와 법제연구원에서는 「법령 영문번역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법령의 영문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법령 영문번역기준」은 2015년 처음 개발되었으며, 현재 3판까지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법령 번역은 이 기준에 따라 번역할 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지거나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가급적 「법령 영문번역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2017: 3).

「법령 영문번역기준」에서는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어에 관한 지식이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영어로 번역된 법령을 보고 법령의 원문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고, 타 법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을 영문 법령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영문 번역의 기본지침, 법령용어, 법령명, 관용어구, 정부조직명, 주요기관명, 공무원의 직군 등의 영문 번역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법령용어의 경우, 법령에서 사용되는 명사, 동사와 사용 빈도가 높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 및 부사(구)를 선정하고,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영문표현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2017).

### 2. 법률의 영문 번역에 관한 선행연구

법률 번역은 ‘법률 메커니즘 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정의한다(유정주, 2019: 170). 이는 법률 번역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법령을 특정 언어로 변환하는 차원을 넘어서 법률 메커니즘 내에서의 의사소통 행위임을 의미한다. 법령 번역은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의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투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이를 넘어 하나의 사회 행위로서 번역 행위는 그 사회적 문맥 속에서 의사소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법령 번역 과정에서 규범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포용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박준석, 2016: 496).

최신의 법률 번역은 원문의 의미와 대상 언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하여 오역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법률 번역에서 원문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그대로 옮기는 것을 제외하고 원문이 가진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상모, 2021: 78).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인식하에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인지에 관한 다양한 논

의가 전개되고 있다. 초기에는 원문 대비 충실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독자와 번역의 목적, 커뮤니케이션, 문화적, 상황 맥락 등의 요소를 중요시하고 있다(이지은, 최효은, 2021: 109 재인용). 한 법령의 영문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의 판단 기준에는 텍스트의 주제, 법률적 지위, 기능, 번역 목적과 기능 등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이지은, 최효은, 2021: 108 재인용). 이를 반영하여 Prieto Romas(2015)의 연구에서는 법률 번역의 품질 평가 기준을 1) 법률 의미의 정확성과 일관성, 2) 전반적 번역 전략과 미시 텍스트 요건을 고려한 용어, 어법, 장르 관습 등 법률 담화 특성에 대한 적절한 번역, 3) 일반적인 언어 정확성(음집성, 통사, 문장부호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이지은, 최효은, 2021: 110 재인용).

우리나라 법령의 영문 번역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법령 영문 번역기준」에 따라 번역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 영문번역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원리를 법령의 영문 번역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법령 영문번역기준」에서 제시하는 영문 번역의 기준은 1) 정확성, 2) 이해의 용이성, 3) 통일성이다(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2017: 3). 이 기준은 법령 번역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이상모(2021: 85)의 연구에서는 번역의 기본 원칙을 1) 정확성, 2) 일관성, 3) 이해의 용이성(가독성)으로 제시한다. 정확성은 원문의 내용을 정보의 손실 및 왜곡 없이 정확히 전달하는 것, 일관성은 하나의 법령 안에서 또는 내용을 같이하는 법령 간 같은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이해의 용이성은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원문의 취지를 자연스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지은, 최효은(2021)의 연구는 1) 정확성, 2) 목표언어의 사용, 3) 가독성, 4) 통일성으로 번역의 품질 검토 기준을 정립하고, 먼저 '정확성'에서는 누락, 추가 및 오역 문제를 평가하였다. '목표언어의 사용'에서는 문법·통사적 문제, 스타일, 문장부호, 오타·오기 문제를, '가독성'에는 어색한 목표언어 표현 여부를, '통일성'에서는 전문용어 사용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들이 번역학 관점에서 번역의 전반적 품질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일호(2022)의 연구에서는 법률 번역에서 사용하는 법개념이 얼마나 국제적 통용성을 가지며, 해외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1) 통용되지 않는 법개념의 사용, 2) 잘못되거나 중의적인 번역어 선택, 3) 불완전한 번역, 4) 통일적 용어 사용을 제시하였다. 박준석(2016)과 이상모(2021)의 연구에서는 '법률 번역의 체계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강조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법률체계가 헌법을 최고법으로 하여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의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위계 내에서도 수평적으로 다양한 동위 법령이 존재,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평생교육법과 관련하여 상위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자체가 헌법 제31조에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위적으로 평생교육법은 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에 합치하여야

한다. 번역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의 법률을 정확히 번역하기 위해서는 상위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이상모, 2021: 80, 81).

이러한 영문 번역의 적절성 판단 기준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법령 번역물을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에서는 민법(서정목, 2013),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지은, 최효은, 2020a), 저작권법(이일호, 2022), 생명·의료 분야 법령(박준석, 2016),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등 13개 시행령(이지은, 최효은, 2021)의 번역 결과물을 대상으로 번역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현재 법령의 번역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문제는 번역 스타일부터 용어 번역에까지 이르고 있으며(이지은, 최효은, 박해진, 2021: 179), 번역가에 따라 명칭, 조문의 제목이나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고, 서로 다른 번역으로 인하여 외국인이 다른 내용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권세훈, 윤재만 2012: 20).

법령번역센터에서 번역한 13건의 법령 번역을 감수한 이지은, 최효은(2021)의 연구에서는 총 1,324건의 번역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문법·통사적 문제 등을 포함한 목표언어의 사용 문제였다. 실제 기존의 법령 번역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수동태 표현의 사용과 주어의 생략(이지은, 최효은, 2020a), '등'과 '및', 그리고 의미가 모호한 문장부호인 가운뎃점(·) 번역의 모호성(유정주, 2012), shall 조동사의 일관적 사용(유정주, 2015) 등 대부분 문법적 차원에서 번역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지은, 최효은(2021: 113)의 연구에서 보다 세부 기준으로 법령 번역 오류를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문제는 용어의 및 표현의 일관성, 고유명사 및 법령 명칭의 적절한 사용과 관련된 전문용어 번역의 문제였다. 전체 오류 중 347건이 전문용어 번역의 문제였다. 민법을 분석한 서정목(2013)의 연구, 의료 관련법을 분석한 박준석(2016)의 연구에서 역시 전문용어와 관련된 다수의 번역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전문용어의 일관적 사용은 국제표준 ISO 17100 번역에서 지켜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이다(이지은, 최효은, 2021: 109). 따라서 법령 번역에서의 전문용어의 번역에 특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문용어의 비중이 높은 법률 번역에서 이러한 전문용어의 정확하고 일관된 번역이 번역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법률은 국가 간 서로 다른 법률체계와 법률을 가지고 있다. 비교 대상으로서 일치하는 동일한 지시대상이 없기 때문에 용어의 번역은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서정목, 2013: 107).

이지은, 최효은(2021: 124-125)의 연구에서 법령의 영문 번역에서 전문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요소로 1)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과 2) 고유명사 및 법령의 명칭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용어의 일관성은 한 법령 내에서 또는 유관 법령 간 동일한 용어가 동일하지 않은 용어, 표현으로 번역하였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둘째, 고유명사 및 법령 명칭은 고유명

사 번역 오류, 법령 명칭의 번역 오류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기관 명칭 등이 실제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는 정식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만약 동일한 법률 또는 타 법령에서 동일한 용어가 다른 표현으로 번역되면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될 위험이 생긴다(이지은, 최효은, 2021: 113, 125).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대로 된 법률 번역을 위해서는 언어능력과 함께 해당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커뮤니케이션 목적, 텍스트의 유형 및 기능에 관한 능력이 필요하다(이지은, 최효은, 2020a: 251 제1인용). 이를 고려했을 때 법령 번역의 문제를 지금과 같이 법학적 관점(박준석, 2016; 이일호, 2022) 또는 번역학 관점(유정주, 2012; 이지은, 최효은, 2020a; 이지은, 최효은, 2020b)에서만 분석한다면 그 의미를 충실히 담는데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공자 입장에서 「평생교육법」의 번역 문제를 법률 및 번역적 차원을 넘어서 법이 담고 있는 전문지식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 적절한 법령 번역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을 대상으로 번역문이 얼마나 적절하게 번역이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적절성’의 검토는 법제처·법제연구원(2017)의 「법령 영문번역기준」과 이일호(2022)의 연구를 참고하여 1) 번역어의 올바른 선택, 2) 통일적 용어 사용, 3) 불완전한 번역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각각의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어의 올바른 선택과 관련해서는 영문 번역에서 규정의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번역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잘못되거나 중의적 번역어 선택 여부와 통용되지 않은 법 개념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통일적 용어 사용에서는 동일한 법률 또는 법령 간 동일한 표현을 동일한 용어로 번역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법령 영문번역기준」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각종 용어와 정의는 기본법 및 해당 법령의 상·하위 법령, 해당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의 번역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번역해야 한다(법제처, 법제연구원, 2017). 이와 함께 법률마다 사용하고 있는 정형화된 구문이 다르게 번역되어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정형화된 구문은 동일한 표현

으로 번역하도록 하고 있다(이상모, 2021: 88). 두 번째 기준에서는 영문 번역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셋째, 불완전한 번역 여부에서는 원문에 대응하지 않은 표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영문 번역본의 문법 및 문사상 오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2.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현재 법제처 법령번역센터에 공개된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은 2019년 12월 3일 공포된 개정안(공포번호 제16677호)에 대한 번역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번역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평생교육법」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조항 및 제8장 보칙은 분석에서 제외한 조항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방법은 한영 법령 번역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분석 방법을 참고로 구체화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1) 원래 영어로 작성된 법령과 번역된 영문 법령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 2) 한국어 특유의 표현이나 구조가 목표언어인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번역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있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번역 법령에서 사용된 영어의 자연스러운 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두 번째 방법에서는 원문 국문 법령의 의미 훼손 없이 영어로 적절하게 표현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이지은, 최효은, 박혜진, 2021: 183). 이 연구의 목표를 고려했을 때 두 번째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 평생교육법 원문의 한국어 개념과 표현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평생교육법의 원문과 법령정보센터의 영문 번역본을 비교하였다. 번역의 적절성은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증거자료를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증거 자료는 법령 번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 분야의 발간 자료를 최우선으로 참고하였다. 먼저 「법령 영문번역기준」을 활용하였다. 「평생교육법」 내에서 타 법령에도 사용된 정형화된 구문이 「법령 영문번역기준」에서 제시된 번역 기준을 따랐는지를 검토하였다. 「평생교육법」과 정확히 일치한 용어 번역 기준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이 기준에서 제안하는 용어의 영문표현과 용례를 확인하였다. 필요한 경우, 법률 용어 사전에서의 개념 정의를 참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Black's Law Dictionary」의 온라인판을 참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법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들이 모여서 이루는 체계 또는 질서를 이해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 다른 법령에 대한 번역 역시 함께 참조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박준석, 2016: 497; 이일호, 2022: 32). 이를 반영하여 「헌법」, 「교육기본법」과 함께 평생교육법 관련 연구(김용, 2017)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문화예술교육지원

법」 등의 타 부처가 관할하는 평생교육 관련 법률을 파악하고 이 법의 영문 번역을 살펴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도와 법적 의미와 같은 제도가 있는 타 국가에서 사용하는 법률상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법령 번역을 위한 방법의 하나임(이상모, 2021: 78-79)을 고려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함께 검토하였다. 변중임, 최돈민, 이덕난, 이세정, 고영상, 위영은(2013), 최은수(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미국의 「인력혁신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일본의 「교육기본법(教育基本法, Basic Act on Education)」, 「생애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生涯學習の振興のための施策の推進体制等の整備に関する法律, Law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Implementation Systems and Other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Lifelong Learning)」, 대만의 「평생학습법(生涯學習法, Lifelong Learning Act)」 등을 타 국가의 참고 법령에 포함하였다. 비영어권 국가의 법령은 그 국가의 정부 부처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공식 번역을 참고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의 번역본, 대만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번역 정보센터(Law & Regulation Database of the Republic of China)에 공개된 영문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관련 국제기구의 협약을 참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준된 국제협약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비준하지 않은 협약이라 하더라도 각 국가의 법규범으로 간주하는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며, 협약의 규범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다(김환식, 2006: 12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유네스코의 「고등교육의 수하,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세계 협약(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자격의 인정에 관한 협약(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유급학습휴가협약(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 등 국제협약을 참고자료에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협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평생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권고문인 유네스코의 「성인학습 교육에 관한 권고문(Recommendation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학습계좌에 대한 권고문(Council Recommendation on Individual Learning Accounts)」을 참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 영문 법령의 적절성을 판단한 기준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번역의 적절성 판정 기준과 판단 자료

기준	판단 자료
번역어의 올바른 선택	• 「법령 영문번역기준」, 법률 용어 사전, 평생교육 관련 외국 입법례, 평생교육 관련 국제협약
통일적 용어 사용	• 「법령 영문번역기준」, 타 법령
불완전한 번역 여부	• 평생교육법(원문)

## IV. 분석 결과

### 1. 번역어의 올바른 선택

#### 가. 학습(study)의 번역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에서 '학습'의 번역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평생교육법」은 헌법 제31조 제1항, 제5항, 교육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에 따른 법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8: 7), 「평생교육법」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평생교육법의 제정 목적 중 하나임을 고려했을 때\* 학습의 번역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관련 법 제정 목적을 외국인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에서는 제28조 제4항 제3호의 학습비 반환 조치의 사유 중 하나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에서 학습을 learning으로 번역한 것을 제외하고† 학습을 모두 study로 번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8조의 학습휴가비 및 학습비는 study leave, study expense, 제23조, 제24조의 학습계좌제, 개인적 학습경험, 학습과정은 각각 study records, personal study experience, a course of study로 번역되었다. '학습'을 study로 번역함에 따라 '평생학습'은 'lifelong study'로 번역되었다. 법 제7장의 제목인 '평생 학습 결과의 관리·인정'은 management and recognition of lifelong study results로, 평생학습도시(제15조)는 lifelong study city,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제15조 제2항, 제3항)는 national lifelong study council, 시·군·구 평생학습관(제21조)은 Si/Gun/Gu lifelong study hall, 읍·면·

\* 「평생교육법」 제1조 목적에서 해당 내용은 2021년 6월 8일 개정 법에 포함되어, 현재 제공 중인 영문 번역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평생교육법」 영문 번역에서 법제31조 8항에도 학습을 learning으로 번역한 예가 있으나 이 조항은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동 평생학습센터(제21조의3)는 Eup/Myeon/Dong lifelong study centers로 번역하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센터의 경우, 제21조의 3에서 제1항에서는 'lifelong study center'로 번역하였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lifelong education center'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 번역의 통일 역시 필요하다.

「법령영문번역기준」에서는 study의 정확한 번역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법률 용어 사전에서 study는 '이벤트 또는 활동의 측면 또는 요소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확인하는 활동(The research, examination, identification of aspects or factors of an event or activity)'으로 정의한다(The Law Dictionary, n.d.). 실제 「법령영문번역기준」 상에서 study의 용법을 찾아보면, study는 교과(course of study), 사례연구(case study), 행정학(study on public administration), 법학(legal studies)(법제처, 법제연구원, 2017: 93, 190, 223, 511) 등으로 연구, 학문의 성격을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제4조의 평생교육의 이념 중 제2항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에서 볼 수 있듯 평생교육은 자발성 및 자기주도성을 지향하며, 형식이나 방법에 제한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참여하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37, 38). 이를 고려했을 때, 연구, 검토, 확인 활동의 의미로 제약되는 study는 학습의 적절한 번역어로 보기 어렵다.

학습의 번역 문제와 관련하여 사전상의 정의뿐 아니라 「평생교육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기본법」에서의 학습과 학습권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교육기본법」에서는 제3조 학습권, 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에서 '학습'을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제4조, 제12조, 제16조에서 학습자를 언급하고 있다. 영문 번역에서 학습권은 'right to learn'으로 학습윤리는 'learning ethics'로 번역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의 영문 번역 전체에서 학습은 모두 learning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study로 번역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학습을 본문에 포함하고 있는 법령 중 학습을 'study'로 번역한 사례도 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학습 병행'을 'work-study combin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제3조 정의에서 '일병행 학습'에서 '학습'을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평가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직업훈련'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학습의 의미와 「평생교육법」에서 사용하는 학습의 의미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타 국가 법령 사례를 살펴보면 역시 학습(學習)은 'learning'으로 번역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기본법」 제3항 평생학습의 이념(生涯學習の理念), 「생애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 대만의 「평생학습법」에서 모두 평생학습을

'lifelong learning'으로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의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과의 용어 일치성을 기하고, 학습의 본래 의미를 고려하여 학습은 study가 아닌 learning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센터는 국제적 통용성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제15조)는 lifelong learning city, 평생학습센터(제21조의3)는 Lifelong learning centers로 번역해야 한다. 평생학습센터를 'lifelong learning center'로 번역하고 제1항과 제2항의 번역을 일치시켜야 한다.

#### 나. 학습휴가(study leave)의 번역

「평생교육법」 제8조의 '유급 또는 무급 학습휴가'를 'paid or non-paid study vac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용어의 번역에 대해서는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서 제시하는 '연차 유급휴가' 번역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연차 유급휴가는 annual paid leave 또는 annual paid vacation으로 번역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휴가'는 leave와 vacation으로 번역할 수 있다(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2017: 316). 「평생교육법」뿐 아니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역시 직업훈련 목적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이 법에 대한 영문 번역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법령 영문 번역 기준」의 용례를 참고할 수 있다.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서는 출산 휴가를 maternity leave, 생리휴가를 menstruation leave로 번역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2017: 953, 956). 이를 통하여 특정 사유로 인하여 일을 쉬는 휴가를 번역할 때는 leave가 적절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 유네스코가 2015년에 채택한 「성인학습 교육에 관한 권고문」에서는 training leave를 사용하고 있다(UNESCO, 2015). 한편 대만의 「평생학습법」 제18조에서는 정부 소속 공무원이 유급학습휴가, 학습비 지원을 받을 권한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公假方式爲之를 'study leave on full pay'로 번역하고 있다. 학습휴가의 적절한 용어 번역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협약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1974년에 채택한 「유급학습휴가협약」을 참고해야 한다. 제목에서부터 볼 수 있듯 이 협약에서는 'Paid Educational Leave'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협약 제1조에서 그 의미를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재정지원과 함께 근무시간의 일정 기간을 교육목적으로 보장하는 휴가(leave granted to a worker for educational purposes for a specified period during working hours with adequate financial entitlements)'로 정의하고 있다(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74). 「평생교육법 해설자료」에서 학습휴가제는 '소속 직원들에게 학습(교육)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줌으로써 직장인의 계속교육 및 재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44). 이를 고려했을 때

법 제8조의 유급 또는 무급 학습휴가는 국제노동기구의 「유급학습휴가협약」에서 정의하는 학습휴가의 영어표현을 고려하여 'paid or non-paid educational leave'로 번역할 수 있다

#### 다. 평생교육사(certified lifelong education teacher)의 번역

「평생교육법」 법 제16조, 제19조 4항, 제24조~27조에서의 '평생교육사'는 'certified lifelong education teacher'로 번역하고 있다. 이 번역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teacher'로의 번역이다.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서는 교사(教師)를 teacher 또는 instructor로 번역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2017: 94).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비록 법령적 해석은 아니지만, teacher의 의미에 대하여 UNESCO는 '학생(pupil 및 students)의 학습 경험을 지도하고 지시를 위하여 공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전일제 또는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특히 이 정의에서는 교수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행정가는 교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n.d.).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업무를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사를 'teacher'로 번역할 경우, 평생교육사 역할이 교수 업무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평생교육사를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본다면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expert, specialist, professional로 번역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2017: 382). 대만의 「평생학습법」 제3조에서는 終身學習專業人員을 'lifelong learning professional'로 번역하고, '평생학습기관에서 평생학습 교육과정 기획, 교수, 가이드스에 참여하는 일련의 전문 직원(the range of professional staff who engage in lifelong learning curriculum planning, instruction, and guidance at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으로 정의한다.

다른 용어로 'educator'를 고려해 볼 수 있다. UNESCO에서는 학교 교사, 대학의 교수, 직장의 훈련가, 촉진자, 평가자, 중재자 및 교수, 훈련, 촉진,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용어로 'educator'를 제안하고 있다(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n.d.).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교육자 고용에 관한 법률(Employment of Educators Act)」에서는 'educator'를 '공립 학교, 추가교육 및 훈련기관, 성인기초교육센터에서 타인에 대한 교수, 교육, 훈련 또는 전문적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teacher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educator'를 사용할 경우, 이는 학교의 범위를 넘어 대학, 직장까지 확대되며, 그 역할은 학습자의 교육, 훈련과 관련된 교수활동과 촉진, 평가활동을 포함하는 교수자, 훈련가,

촉진가, 평가자, 조정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협약은 아니지만 UNESCO(2015: 13)의 「성인학습 및 교육에 관한 권고문」에서는 adult educato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성인교육 학계에서는 권고문의 표현과 같이 adult educator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사를 lifelong educator 또는 국제적 통용성을 고려하여 adult educator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때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사는 법에 따른 국가 자격으로 인정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certified' lifelong educator 또는 'certified' adult educator로 번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라. 학습계좌(study record)의 번역

「평생교육법」 제19조 제4항과 법 제23조의 학습계좌는 'study record'로 번역하고 있다.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계좌의 정의인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의 번역은 'a system to manage personal study experiences of people comprehensively and intensively'로 제시하고 있다.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서 record는 기록을 의미한다. 그 용례를 보면 범죄경력(criminal record), 수사경력(investigation record)과 같이 이력의 의미로 함께 사용함을 볼 수 있다(법제처, 법제연구원, 2017: 120, 209, 884). 「평생교육법」에서 학습계좌를 학습경험의 기록을 넘어서 이를 종합적, 집중적 관리하는 제도로 정의하는 만큼 'record'는 '계좌'의 의미를 담기에는 부족하다.

학습계좌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참고하여 번역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살펴볼 수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제1항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제도'로 의미를 정의한다. 현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시행령 영문 번역은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전 법령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중 유일하게 영어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는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accounts for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로 번역하고 있다. 「2008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자료」에서는 「평생교육법」에서 제안한 학습계좌제와 유사제도로 스코틀랜드의 개인학습계좌제(현 개인훈련계좌제), 미국의 개인훈련계좌제, 평생학습계좌제를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90). 미국의 개인훈련계좌제를 규정하고 있는 「인력혁신과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에서는 individual training accounts로 표현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개인학습계좌제의 근거 규정인

「개인학습계좌(스코틀랜드) 규정 2011(The Individual Learning Account(Scotland) Regulations 2011)」에서는 개인학습계좌를 'individual learning account'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학습계좌는 '학습계좌 소유주의 이름으로 스코틀랜드 장관이 개설, 유지하는 계좌로 계좌 소유주의 연간 활용 가능한 지원 금액을 기록하는 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2021년 12월 10일 유럽회의(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학습계좌에 대한 권고문(Council Recommendation on Individual Learning Accounts)」에서 역시 학습계좌(learning account)를 '한정된 기간 동안 훈련과 관련 재정지원 혜택을 누적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 정의(European Commission, 2021: 21), learning account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제도와 비교했을 때 「평생교육법」 제19조 제4항과 법 제23조의 학습계좌는 학습비용 지원 포함 여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해설자료」에서 제시하는 학습계좌제의 도입 배경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 사항이 당초 제도 설계 단계에서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88). 따라서 학습계좌제를 learning account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마. 기타 사항

위에서 논의한 번역 문제 이외에 번역어의 올바른 선택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2조 제3호 '문자해득교육'의 정의에서 문자해득교육은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초생활능력'은 'basic living capability'로 번역하고 있다. 법 제39조 제1항에서의 '기초능력' 역시 'basic capability'로 번역하고 있다. 법 제17조 제2항에서 역시 능력은 capability로 번역하고 있다.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서 능력(能力)은 capacity, capability, ability, competence, faculty 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법제처, 법제연구원, 2017), 국제적 통용성 차원에서 기초생활능력의 영문 번역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미국의 「인력혁신과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제3장 정의에서 '기초기술 결핍(basic skills deficient)'을 정의하면서 기초 기술을 한 개인이 직업, 가족,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 말하기,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하기 역량으로 규정함을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제2조 제3호의 기초생활능력은 'basic skills'로 번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법 제2조 제1항의 평생교육 정의에서 문화예술교육을 'culture and art education'에서 'culture and arts education'으로 수정해야 한다. 실제 문화예술교육을 주로 다루는 「문화

예술교육지원법」에서 문화예술교육은 'culture and arts educ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셋째, 법 제15조, 제28조 제1항에서 지역사회를 community로 번역하고 있다.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서는 community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regional community 또는 local community로 번역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뿐 아니라 농촌사회를 rural community, 국제사회를 international community 또는 world community of nations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법제연구원, 2017: 106, 431, 872, 935). 이러한 지침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는 local community로 명료하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제30조 제1항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서 '교양의 증진'을 'conduct cultural educ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서 '교양의 증진'은 제30조 제1항뿐 아니라 제37조 제2항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서로 다르게 번역되고 있다. 제30조 제1항의 번역에서는 'conduct cultural education'으로, 제37조 제2항의 번역에서는 'enhance culture'로 다르게 표현되었다. 원개념을 고려했을 때 '교양의 증진'은 'conduct cultural education'보다는 제37조 제2항의 번역에 따라 'enhance culture'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섯째, 법 제41조 제2항 제3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서 '능력측정검사'를 'aptitude measurement test'로 번역하고 있다. 「법령 영문번역기준」에서 직업적성검사를 'vocational aptitude test'로 번역하는 것처럼 aptitude test는 적성검사를 의미한다(법제처, 법제연구원, 2017: 106). 「평생교육법」 제41조 제2항 제3호는 능력검사를 통한 학점, 학력 등의 인정에 관한 조항이므로 aptitude는 「법령 영문번역기준」에 따라 ability/capability/capacity 중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 평가는 test 또는 assessment로 번역함이 적절하다.

## 2. 통일적 용어 사용

### 가. 평가인정의 번역

평가인정은 「평생교육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다.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학습계좌 관리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24조 제1항 제2호 학점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운영 교육훈련 기관 학위 취득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제29조의2 제1항에서 학점은행기관의 장의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운영에서 공통적으로 평가인정을 언급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평가인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된 정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이 법 제2조 정의에서 ‘평가인정’을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학습과제, 평생교육사, 학점은행제 등 대상 제도는 다르지만, 일정한 조건 부합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평생학습과제에 평가인정 과정,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과정, 학점인정 과정으로 공식 인정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평가인정의 번역을 살펴보면 먼저 평생학습과제와 관련된 법 제23조 제2항과 제4항에서는 각각 ‘학습과정을 평가인정 할 수 있다’를 ‘evaluate and accredit a course of study’로, 평가인정을 ‘evaluation and accredit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법 제23조 제3항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사유에서 제2호, 제3호의 평가인정은 ‘evaluation and accredit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평가인정 취소 사유에 관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서는 평가인정을 ‘evaluation and recognition’으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제24조에서는 ‘평가인정’을 ‘evaluation and recogni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반면 제29조의2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에서의 ‘평가인정’은 영문 법령에서 ‘evaluation and accredit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인정을 적절한 용어로 통일하여 번역해야 한다.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서 평가인정의 번역과 관련, 평가의 경우 appraisal 또는 estimation으로 번역하도록 있다(법제처, 법제연구원, 2017: 484). 그러나 법률 용어 사전에 따르면 appraise는 ‘가격 또는 가치의 고정 또는 설정’, ‘(서면으로)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수정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estimate는 ‘고려 중인 특정 주제에 대한 회자 또는 작가의 판단 진술’을 의미하며 기업의 손익을 추정하기 위한 계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한다(Law Dictionary, n.d.). 이를 고려했을 때 평가의 번역은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서 적절한 번역 기준과 용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평가인정의 적합한 번역을 위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번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개념 정의를 비롯하여 이 법 전반에서 ‘평가인정’을 ‘assessment and certific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법 제2조 제1항에서 평가인정의 정의에 대한 영문 번역에서는 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행위를 evaluate,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certify로 번역하였다.

국제 수준에서는 고등교육 수준의 학습 결과 인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참고할 수 있다. 유네스코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자격의 인정에 관한 협약」에서는 기관 또는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assessment를 사용하고 있으며, 협약 제1조에서 평가의 의미를 ‘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교육적 질을 규명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UNESCO, 2011: 3).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에서 현재 평가를 evaluation으로 번역하는

것이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조항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처럼 assessment로 번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자격의 인정에 관한 협약」에서는 「평생교육법」의 ‘인정’의 번역인 accreditation의 의미 역시 정의하고 있다. accreditation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적절한 기준을 충족했음을 인정 또는 증명하는 평가 및 검토 과정’으로 정의한다(UNESCO, 2011: 3). 한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을 certification으로 번역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세계 협약」을 참고할 수 있다. 이 협약에서는 교육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단기과정 또는 선행학습을 ‘certified partial studies’ 또는 ‘certified prior learning’으로 표현한다(UNESCO, 2011: 5, 6). 법률 용어 사전에서 accreditation은 ‘특정 대상에 대한 인증(certification), 조직의 무결성을 확인하며, 조직에 대하여 부여 가능한 것’으로 정의한다. 인증은 ‘특정 대상의 진위를 보증하는 행위이며, 문서에 대한 서명을 동반하는 것’을 의미한다(Law Dictionary, n.d.).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부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9조의2 제1항 평가인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번역에 따라 ‘assessment and certification 또는 assessment and accreditation’으로 번역을 통일할 수 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제24조에서의 ‘인정’이 기관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인정’이 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학점 또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영문 법령에서는 제41조 제1항, 제2항의 인정을 ‘recogni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역시 학점 또는 학력 인정을 recogni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교육기본법」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0조 제2항 ‘평생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에서 ‘인정’은 recogni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세계 협약」에서 ‘recognition’은 ‘신청자에게 (고등교육 입학 지원 또는 고용기회의 가능성에 관한) 결과를 제공할 목적으로 외국 교육 자격, 단기과정 또는 선행학습의 유효성 및 학업 수준에 대한 권한 있는 인정 기관의 공식 승인(a formal acknowledgment by a competent recognition authority of the validity and academic level of a foreign education qualification, of partial studies, or of prior learning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n applicant with outcomes including)’으로 정의한다(UNESCO, 20019: 2, 3). 미국의 「인력혁신과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대만의 「평생학습법(Lifelong Learning Act)」에서 학습 결과의 ‘인정’을 모두 ‘recognition’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제24조의 번역은 수정하되, 제41조 제1항, 제2항에서 인정은 recognition으로 번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 나. 평생교육 과정의 번역

평생교육 과정 역시 「평생교육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조항별로 서로 다른 용어로 번역되어 있다. 제6조와 제22조 제1항에서는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제28조 제2항 제5호, 제28조 제4항 제4호, 제30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2항에서는 lifelong educational course, 제4조 제4항, 제41조에서는 lifelong education course로 번역하고 있다. 반면 법 제19조와 제23조,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9조의2에서 'a course of study'로 번역하고 있다. 각 용어의 번역이 교육과정의 의미는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표현으로 인하여 독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서 과정의 번역은 '전문교육과정'의 번역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전문교육과정은 special education course로 번역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법제연구원, 2017: 383). 이를 고려하여 평생교육 과정의 번역을 'lifelong education course'로 통일할 수 있다.

#### 다. 평생교육 상담의 번역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와 법 제21조 제2항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사업에 공통으로 '평생교육 상담'이 포함되어 있다. 제21조의3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서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에 역시 상담을 명시하고 있다.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상담은 'counselling'으로, 제21조 제3항 제2호의 시·군·구 평생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상담은 'consult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제21조의3 제1항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상담은 'advice'로 번역하고 있다.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서 상담의 번역에 대한 기준은 직업 상담 번역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직업 상담을 vocational counselling counsel, consultation 또는 job consultation으로 번역하도록 하고 있다. advice는 자문 또는 지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제시하고 있다(법제처, 법제연구원, 2017: 436, 845). 법률 용어 사전에서는 이들 용어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 counselling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는 것'의 의미이며, 주로 변호사 또는 카운슬러의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consultation'은 사건에 관련된 변호인 간의 회의, 그 문제를 논의하거나 수행 방법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advice는 견해, 의견 또는 변호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조언을 뜻하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Law Dictionary, n.d.).

「평생교육법」 상에서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업무 또는 사업으로서 평생교육 상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활동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 번역임을 고려해서 법률 용어 사전상의 용어 정의를 참고하여 법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21조의3의 상담은 counselling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마. 기타 사항

위에서 논의한 문제 이외에 동일적 용어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31조 제8항의 '학교생활기록'의 번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문 번역은 'school life records'로 번역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학교생활기록 관리를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을 준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의 영문 번역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을 'school records'로 번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생정보의 보호 원칙의 영문 번역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을 'school activity records'로 번역하고 있다. 이 세 법에서 지칭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의 의미에 차이가 없는 만큼 「교육기본법」을 기준으로 번역의 통일이 필요하다.

둘째, 법 제37조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언론기관'의 번역이다. 영문 법령에서 언론기관은 press organ으로 번역하고 있다. 「법령 영문번역기준」에서는 언론기관을 press 또는 media organization으로 번역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법제연구원, 2017: 310). 언론기관을 press organ으로 번역하였을 때 비록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문제는 없지만 타 법령과 통일성 차원에서 press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 밖에 타 법령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정형화된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에서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서는 Relationship to other acts로 번역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에서는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로 번역하고 있는 만큼 번역 기준에 맞추어 표현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의 '평생교육의 이념'에서 '이념'을 「법령 영문번역기준」에서는 basic idea로 번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4조, 법 제29조에서는 Ideals of Lifelong Educ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 영문번역기준에 맞추어 ideal을 idea로 수정해야 한다(법제처, 법제연구원, 2017: 17).

### 3. 불완전한 번역 여부

불완전한 번역은 독자의 원문 이해에 방해가 되는 잘못된 번역을 의미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법령의 영문 번역은 법령번역센터의 전문 번역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에서 불완전한 번역 관련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나타났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15조 제2항의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목적의 번역이다. 이 조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문 번역에서는 이를 ‘A national lifelong study city council may be established to promote the connection and cooperation among lifelong study cities under paragraph (1) and information exchange.’로 번역, 정보교류를 제외한 연계 및 협력 활동이 평생학습도시 간에 이루어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among lifelong study cities under paragraph (1)’를 ‘information exchange’ 뒤로 이동해야 한다.

둘째, 법 제39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의 번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이는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eferentially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the literacy education programs under paragraph (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조건으로 ‘literacy education programs under paragraph (2)’, 즉 2항에 근거한 프로그램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이는 원 조항에 없는 표현인 만큼 삭제해야 한다.

셋째, 법 제29조의 2의 ‘학점은행기관’의 번역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 조항에서 학점은행기관은 ‘academic credit bank institu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학점은행기관’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정의하고 이 조항 이후에는 ‘credit bank institution’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법 제29조의 2에서도 academic credit bank institution을 credit bank institution로 번역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평생교육법 조항별 영문 번역의 수정 필요 사항과 수정안

조항	수정 필요 사항	현재 번역	수정안
제2조 제1항	문화예술교육	culture and art educati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Relationship to other acts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제4조	이념	Ideals of Lifelong Education	Basic Idea of Lifelong Education
제6조와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5호, 제28조 제4항 제4호, 제30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2항	평생교육 과정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lifelong educational course, lifelong education course, a course of study	lifelong education course
제8조	학습휴가 학습비	study leave study expense	educational leave learning expense
제15조	평생학습도시	lifelong study city	lifelong learning city
제15조 제2항, 제3항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national lifelong study council	national lifelong learning city council
법 제1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A national lifelong study city council may be established to promote the connection and cooperation among lifelong study cities under paragraph (1) and information exchange	A national lifelong city council may be established to promote the connection, and cooper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among lifelong study cities under paragraph (1)
법 제15조, 제28조 제1항	지역사회	community	local community
법 제16조, 제19조 4항, 제24조~27조	평생교육사	certified lifelong education teacher	(certified) lifelong educator 또는 (certified) adult educator
제19조 제4항, 제23조	학습계좌	study record	learning account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21조의3, 제21조의3 제1항	상담	counselling consultation advice	counselling
제21조	시·군·구 평생학습관	Si/Gun/Gu lifelong study hall Eup/Myeon/Dong lifelong study centers	Si/Gun/Gu lifelong learning hall Eup/Myeon/Dong lifelong learning centers
제21조의3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lifelong study center	
제 23조	개인적 학습경험	personal study experience	personal learning experience
제23조 제2항~제4항, 제24조 제1항 제2호,	평가인정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evaluation and recognition	assessment and certification 또는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제29조의2 제1항			
제29조의 2	학점은행기관	academic credit bank institution	credit bank institution
제30조 제1항	교양의 증진	conduct cultural education	enhance culture
제31조 제8항	학교생활기록	school life records	school activity records
법 제37조	언론기관	press organ	press
제39조 제1항	기초능력	basic capability	basic skills
제39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eferentially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the literacy education programs under paragraph (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eferentially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the literacy education program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법 제41조 제2항 제3호	능력측정검사	aptitude measurement test	ability/capability/capacity test 또는 assessment
제7장	평생학습	lifelong study	lifelong learning

## V. 결론 및 논의

현재 법령번역센터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은 2019년 12월 3일에 공포된 개정안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그 이후 「평생교육법」은 세 차례 더 개정되었다. 현재 시행 중인 「평생교육법」은 2021년 6월 8일 일부 개정된 후 12월 9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의 학습권리 보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로 명시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지원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의미와 지원제도의 추진 근거를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재의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정 법안에 대한 영문 번역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를 고려하여 새롭게 이루어질 「평생교육법」 영문 번역에서 새롭게 추가된 조항의 번역 이외에 기존 조항의 번역에서는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번역어의 적절한 선택 여부, 번역의 통일성 준수 여부, 번역의 불완전성의 세 가지 기준을 근거로 영문 번역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는 번역어의 적절한 선택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이 중 '학습'의 번역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현행 영문 번역에서 학습을 study로 번역함에 따라 평생학습은 lifelong study, 평생학습도시는 lifelong study city, 평생학습센터는 lifelong study center로 번역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학습휴가, 학습계좌제와 같은 제도들은 study vacation, study record로 번역하여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이나 타 국가의 법령과 비교했을 때도 표현상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습은 learning으로 번역을 통일하고, 관련 용어를 이에 맞게 lifelong learning city, lifelong learning center, educational leave, learning account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

통일적 용어 사용 측면에서 '평가인정', '평생교육 과정', '평생교육 상담'의 용어 번역이 「평생교육법」 내의 조항 내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관련 법령과 불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 용어의 번역은 번역상 잘못된 번역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같은 용어를 서로 다른 번역어로 표현함에 따라 해외의 독자들이 이를 서로 다른 제도,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번역의 통일이 필요하다.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이 법제처 법령번역센터의 전문 번역사를 통하여 번역이 이루어지고, 전문 감수를 거쳐 서비스가 제공될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완전한 번역 문제 역시 나타났다. 평생학습도시 간의 협력 활동의 범위나 문해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의 제한은 원 조항과 다르게 번역되었거나 원문에 없는 표현이 영문 번역에만 들어간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는 독자의 이해를 위하여 추가된 문제라기보다는 원문의 취지를 다르게 해석하게 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한편 이 연구의 분석 결과 평생교육사와 (학습 결과의) 평가인정의 경우 현재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으로는 그 본질을 전달하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국제적 동향을 고려했을 때 복수의 용어가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번역에는 복수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최선의 번역어를 선택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및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령 번역의 중요한 용도 중 하나는 외국어로 작성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관련 학술 저서 또는 실무 문서를 작성할 때 번역의 지침으로의 활용이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에 관한 학술논문이 지속해서 발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에서 개념과 제도의 번역어를 명확히 제공하고, 학자 및 실무자로 하여금 이를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 번역의 실질적 수정 작업은 법령번역센터가 수행하지만, 이 연구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번역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번역 수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 기관의 역할은 법령 번역의 수정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회, 각종 단체를 통하여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영문 번역

문이 학술 및 실무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평생교육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은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로 제시한 번역의 문제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에 역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연구의 후속 연구를 통하여 「평생교육법」의 완전한 영문 번역을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조항을 포함한 법 조항 전체의 번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고영상(2010). 한국 평생교육법제 변화 과정과 주요 쟁점. **평생교육·HRD 연구**, 6(3), 1-27.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권세훈, 윤제만(2012). **대한민국 법령영문화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비교공법학회.  
 김도훈, 손수연(2011). 법률 문서 번역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2(3), 7-31.  
 김용(2017). 평생교육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교육법학연구**, 29(4), 53-74.  
 김진아(2021). 한·중 중·한 법령 번역에서 법률용어 선택 전략. **통번역학연구**, 25(2), 1-27.  
 김환식. (2006). ILO, 프랑스와 한국의 유급학습휴가제 비교 연구 - 법령분석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25(1), 115-136.  
 박준석(2016). 법령 번역의 의의와 문제점. **법학연구**, 49, 493-513.  
 박호근(2000). 평생교육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형태에 관한 연구: 정부안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2), 169-192.  
 법령번역센터(2022). 영문법령통계.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Statistics.do](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Statistics.do)에서 2022. 7. 15 인출.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2017). **법령 영문 번역 기준**. 법제처.  
 변종임, 최돈민, 이덕난, 이세정, 고영상, 위영은(2013). **100세 시대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정비방안 연구**. 교육부.  
 서정목(2013). 법률번역에 있어서 전문용어의 번역에 관한 연구. **영어영문학**, 18(2), 107-144.  
 오혁진(2011). 1990년대 말 평생교육법 제정 과정 분석을 통한 평생교육 개념 혼란의 기원과 논리 검토. **평생교육학연구**, 17(1), 119-142.  
 유정주(2012). 법령어의 애매성과 번역가의 해석문제. **번역학연구**, 13(5), 109-141.  
 유정주(2015). 한국 법령 번역에서 'shall'의 사용에 대한 고찰: 비교 코퍼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T&I review**, 5, 71-92.  
 유정주(2017). 법률번역 평가를 위한 텍스트일치성 측정 모델 제언. **통역과 번역**, 19(2), 101-130.  
 유정주(2019). 정본번역의 용어일관성 사례연구 - 투자보장협정의 법인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3(4), 169-201.  
 이상모(2021). 페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법령번역 접근방법. **T&D Review**, 11(2), 75-100.  
 이일호(2022). 저작권법 영문번역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 - 번역문에 사용되는 법개념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35(1), 5-57.  
 이종만(2002). 평생교육의 법제화 과정 및 개정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4(1), 103-116.

- 이종만(2003). 평생교육 관련 법규의 구조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 *교육법학연구*, 15(1), 207-221.
- 이지은, 최효은(2020a). 코퍼스 연구를 통해 살펴본 법령 번역 텍스트의 언어적 특성: 수동태 구문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21(2), 251-284.
- 이지은, 최효은(2020b). 한영 법령 번역에서 이중주문 구문 번역 양상. *통번역학연구*, 24(3), 97-135.
- 이지은, 최효은(2021). 한영 법령번역 문제에 대한 고찰: 시행령 번역 감수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26(1), 107-130.
- 이지은, 최효은, 박혜진(2021). 한영 법령번역 스타일에 대한 제언: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의 법령번역 지침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5(1), 17-216.
- 이지은, 최효은(2022). 한영 법령 번역 품질 제고를 위한 번역 방식에 관한 소고 - 직역 문제를 중심으로 -. *통역과 번역*, 24(1), 243-276.
- 정호정(2010). 번역과 전문용어학, 전문용어학과 번역학. *통역과 번역*, 12(2), 235-255.
- 정호정(2013). 공공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시스템 연구: 유럽연합 3대 번역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5(2), 215-248.
- 최은수(2019). *주요 외국의 평생교육정책*. 학지사.
- Atlay, A. (2002).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translation of legal texts. *Translation Journal*, 6(4). <http://translationjournal.net/journal/22legal.htm>에서 2022. 7. 10 인출.
- Chauhan, A., Bak, H., Subbaswamy, S., & Dixit, V. (2017). Lifelong learning and skil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es: A comparison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In Fedeli, M. (Ed.), *Adult education and work contexts: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challenges* (pp. 41-59). Frankfurt: Peter Lang.
- European Commission(2021). *Council recommendation on individual learning account*.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6/16/council-recommendation-on-individual-learning-accounts-to-boost-training-of-working-age-adults/>에서 2022. 7. 10 인출.
- Han, S. (2001). Creating systems for lifelong learning in Asia.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2, 85 - 95.
- Huang, Y. (2017). The establishment of lifelong learning educator system in Korea.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83, 101-111.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1974). *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No. 140)*.

-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LO\\_CODE:C140](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LO_CODE:C140)에서 2022. 7. 15 인출.
- Kim, Y., Kim, W., & Rhee, K. (2021). Composition of a unified model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qualification types of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disabled: a basic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convergence major in Daegu Un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9(4), 40-51.
- Lee, J. & Desjardins, R. (2019). Changes to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ALE) policy environment in Finland,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mplications for addressing inequality in ALE participation. *Compare: A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51(2), 221-239.
- Lee, K., & Kang, D. (2022). Between 'shopper' and 'owner': emerging agency of lifelong learner in South Korea's marketing-driven expansion of lifelong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DOI: 10.1080/02601370.2022.2086310.
- Prieto Ramos, F. (2015). Quality assurance in legal translation: Evaluating process, competence and product in the pursuit of adequacy. *International Journal of Semiotics of Law*, 28, 11-30.
- Sarcevic, S. (1997). *New approach to legal translation*. Hague-London-Boston: Kluwer Law International.
- Teo, T., Kim, S. & Liang, L. (2018). E-Learning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Integrating effectiveness and legitimacy perspectives. *Information Systems Frontiers volume 22*, 511 - 528.
- The Law Dictionary(n.d.). *Black's Law Dictionary*. <https://thelawdictionary.org/>에서 2022. 7. 2 인출.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n.d). *Glossary*. <http://uis.unesco.org/en/glossary>에서 2022. 8. 1 인출.
- UNESCO(2011). *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17670/PDF/217670eng.pdf.multi.page=31>에서 2022. 7. 15 인출.
- UNESCO(2015). *Recommendation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Paris: UNESCO.

Varo, E. & Hughes, B. (2002). *Legal translation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교육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23조의3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법률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법률 제17592호, 2020. 12. 8., 타법개정).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722호, 2018. 7. 20., 일부개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평생교육법 (법률 제18195호, 2021. 6. 8., 일부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법률 제13229호, 2015. 3. 27., 일부개정).

Basic Act on Education,

<https://www.mext.go.jp/en/policy/education/lawandplan/title01/detail01/1373798.htm>에서 2022.

7. 2 인출.

Employment of Educators Act.

<https://natu.org.za/wp-content/uploads/2022/04/EMPLOYMENT-OF-EDUCATORS-ACT.pdf>

에서 2022. 7. 2 인출.

Lifelong Learning Act.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H0080048>

에서 2022. 7. 2 인출.

The Individual Learning Account (Scotland) Regulations 2011.

<https://www.legislation.gov.uk/ssi/2011/107/regulation/1/made>에서 2022. 7. 20 인출.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https://www.congress.gov/113/bills/hr803/BILLS-113hr803enr.pdf>에서 2022. 7. 2 인출.

· 논문 접수 2022. 08. 10 / 수정본 접수 09. 18 / 게재 승인 09. 25

· 조순옥: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평생교육 전공으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거쳐 현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직하고 있음. 주요 관심 분야는 평생교육 참여 성과, 평생교육 국제협력 등임.

## Abstract

### A Study on the Issues for Improving Korean-English Transl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Sunok, Jo(Inj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nd to draw improvements, in order to accurately deliver the original text of the Act. For this, the study intensively reviewed the following: 1) if the accurate meanings were delivered by faithfully translating the original text, 2) if the translation shows consistency with the Act, and 3) if the translation was performed appropriately, so the purpose of the original text could be naturally and easily understood.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selecting correct translated terms, it would be necessary to modify the existing translated words such as 'study', 'lifelong study city', 'lifelong study center', 'study vacation', and 'study record'. Second, in relation to the use of consistent terms, there were problems such as a discordant translation of the learning process and different translations of accreditation and recognition in each provision. Third, in relation to the matter of incomplete translation, there was the addition of unnecessary translation to some provis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which is an initial study reviewed the adequacy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follow-up studies are needed so that the implementation of selecting the best translation for the provision of multiple improvements will be possible. In addition, if follow-up research reveals even errors, including provisions related to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it would be possible to suggest the more complete English transl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 **Key words:** Lifelong Education Act, lifelong learning, legal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